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자치행정과)

의안번호	제277호
제 출 자	이일준의원 외 15명(2024. 4. 1.)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성북구 통·반장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장의 통장회의 등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2항)
- 나.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부서협의 : 자치행정과

다. 입법예고 : 2024. 4. 4. ~ 2024. 4. 8.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통·반장¹⁾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9조제2항²⁾을 신설하여 동장이 통장회의 또는 연석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 안 제2조 : 관할아래 → 관할 아래

· 안 제7조 : 요망사항 → 건의사항,

주민지도 (전시에 한함) →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배급 (전시에 한함) → 배급(전시에 한함)

· 안 제8조 : 반내 → 반 내, 월 1회로하고 → 월 1회로 하고

· 안 제10조제1항³⁾ 문구를 재정비하고, 편의제공의 이유에 대해 조례

1) 2024. 3. 기준 20개동 통장 450명, 반장 2,297명

2) 제9조(통 반장회의) ① <생략>

② 동장은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제10조(편의제공 등)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공적장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 임무수행⁴⁾에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 통·반장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08. 12. 23, 2011.7.20)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및 통·반 관리 (개정 2008. 12. 23)
4. 각종 시설 확인
5. 구 추진 주요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 및 협조 (개정 2008. 12. 23, 2011.7.20)
- 5의2.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신설 2008. 12. 23, 개정 2011.7.20)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 (전시에 한함) (개정 2011.7.20)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20)
10.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 등 새로운 임무개발 및 참여유도 (신설 2011.7.20)
11. 구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 (신설 2011.7.20)
12.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 (신설 2016.3.3.)